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5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신동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민병주, 박 석,
박춘선,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35명)

1. 제안이유

- 결혼식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대상을 기존의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로 확대. (제4조의7)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항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를 “시설의 대관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이 결혼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u>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생략)</p>	<p>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u> ----- ----- <u>시설의 대관료</u> ----- ----- --.</p> <p>1. <u>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u></p> <p>2. <u>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u></p> <p>3. <u>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이 결혼하는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액이 발생하나 해당 대상자에 대한 통계정보가 적어 현재로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자체추계 또한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액은 해당 대상자에 대한 **현황정보가 적어** 현재 수집가능한 정보¹⁾를 근거로 추계하기에는 **추계객관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함
 - **[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액을 추정하려면 늘어나는 대상의 연간 공공예식장 이용횟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다만, 결혼적령기²⁾의 서울소재 직장인, 자영업자에 대한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간접적 산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감소분과 차이가 클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훈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1) **[공공예식장 이용현황 정보 필요]** 서울시 관련부서(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문의결과 현재 재직자에 관한 정보는 파악되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아, 해당 규정에 의해 감소될 세외수입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25년 서울시내 직장 재직자의 공공예식장 예약 현황(2025년 3월말 기준)
 - 예약건수 : 총 17건
 - 세부내용 : 북서울꿈의숲(69,710원) 9건, 시립대 자작마루(480,000원) 6건, 한강공원물빛무대(오전, 1백만원) 1건, 매현 시민의숲(64,350원) 1건

2) **[예식장 수요 고려]** 예식장 수요가 가장 많은 나이대를 기준으로 간접적 산출